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**704**

제출년월일: 2009. 6.

제 출 자:울산광역시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상행위별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금액 상 향조정 및 일부신설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O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(별표 1)
 - 개별기준 위반시항 부과금액 상향조정(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제28조 위반)
 - 1차 "경고"에서 "50만원 또는 100만원"으로 상향조정
 - · 2차 "20만원"에서 "100만원 또는 200만원"으로 상향조정
 - · 3차 "50만원"에서 "200만원 또는 300만원"으로 상향조정
 - 4차 "100만원"은 삭제
 - 개별기준 위반사항 부가대상 및 부과금액 일부 신설(법 제23조제2항 위반)
 - · 대상 :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
 - · 금액 : 1차 1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300만원

3. 근거법규

- O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
- O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O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09. 5. 18 ~ 6. 7)

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과태료의 부과 기준

근거	E-JU-A-J	과태료(만원)				
법령	부과대상	1차	2차	3차 이상		
	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		
	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					
	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		
	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					
	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					
	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					
국민건강	경우					
증진법						
(제34조	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		
제1항	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					
내지	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	
제2항)	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					
	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					
	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	
	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				
	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	
	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					
	사를 거부・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			

(일반기준)

- 가.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 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 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		
【별표 1】 과태료 부과 기준 【별표 1】 과태료 부과 기준											
근거 법령	부과대상	<u>부과금액(만원)</u>		근거	위반대상	<u> 과태료(만원)</u>					
	<u> </u>	<u>1차</u> 위반	<u>2차</u> 위반	<u>3차</u> 위반	<u>4차</u> <u>위반</u>	법령	<u> </u>	<u>1차</u>	<u>2차</u>	<u>3차</u> 이상	
국민건 증진법 (제34 조제1항 내2항	<u>법 제9조제2항의규정에</u>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 한 <u>자</u>	경 고 (시 정)	<u>20</u>	<u>50</u>	100	국민건 강 진법 조 제1항 제2항	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 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 배를 판매한 <u>경우</u>	<u>100</u>	200	300	
	법 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 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 여 지정하지 아니한 <u>자</u>	경 고 <u>(시</u> 정)	<u>20</u>	<u>50</u>	100		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	100	200	300	
	<u>〈신설〉</u>						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	100	200	300	
	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 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<u>자</u>	경 고 (시 정)	<u>20</u>	<u>50</u>	100		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 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 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 여 담배를 판매한 <u>경우</u>	1 50	100	<u>200</u>	
	법 제9조제4항 <u>규정에</u> 위반 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<u>자</u>	경 고 (시 정)	<u>20</u>	<u>50</u>	<u>100</u>		법 제9조제4항 <u>후단을</u> 위반 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<u>경우</u>		<u>100</u>	<u>200</u>	
	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가 관 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 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	<u>20</u>	<u>50</u>	100		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<u>50</u>	100	<u>200</u>	
(주) 1.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. 2.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고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. 3. 영업(소)의 양도,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(소)에 행해진 처분(이미 처분기간이 결과한 처분, 처분기간이 진행중이 처분등)은 양수인,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.					기: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침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. 나: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 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						

의 안 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704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09. 6. 25(목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09. 7. 2(목) 라. 위원회 상정 : 2009. 7. 13(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)

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나 동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대상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과태료 부과기준 개정(별표 1)

- 가. 개별기준 위반사항 부과금액 상향조정(법 제9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, 법제28조 위반)
 - 1차 "경고"에서 "50만원 또는 100만원"으로 상향조정
 - 2차 "20만원"에서 "100만원 또는 200만원"으로 상향조정
 - 3차 "50만원"에서 "200만원 또는 300만원"으로 상향조정
 - 4차 "100만원"은 삭제
- 나. 개별기준 위반사항 부가대상 및 부과금액 일부 신설(법 제23조제2항 위반)
 - 대상 :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

• 금액: 1차 1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300만원

5. 관련법규

- 가.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
- 나.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
- 6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홍성춘)
 - O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 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
- O 이 법 위반자 등에 대한 대상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 법령과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 하다고 사료됨.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